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확대〉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32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동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9. 13.
3. 회 부 일 : 2024.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이유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 고질적으로 부당 하도급에 대해 실제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매우 적으며(2016년~2020년 10월까지 2건 판결). 적용되는 손해배상액은 평균 1.5배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수급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부당한 대금결정금지(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금지(제8조, 부당한 반품금지(제10조), 부당한 감액금지(제11조), 기술자료 유용 행위 금지(제12조의3제4항), 보복조치 금지(제19조)를 위반한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생략)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손해의 5배에 ----- ----- ----- ----- ----- -----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	<삭 제>

현행	개정안
<u>배 이내</u>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④ (생략)	<삭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고려 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 다. 1.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현행 제35조제2항은 부당한 대금결정금지(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금지(제8조, 부당한 반품금지(제10조), 부당한 감액금지(제11조), 보복조치 금지(제19조)를 위반한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며, 기술자료 유용 행위 금지(제12조의3제4항)를 위반한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함.

□ 개정안은 현행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5배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수급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특히 현행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3배 이내’ 또는 ‘5배 이내’로 정하여 재량적 배수배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개정안

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5배'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¹⁾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한다는 특징이 있음.

□ 이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의 크기가 3배(기술유용행위의 경우 5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부당한 대금지급 금지(제4조)를 위반한 사건에 있어 3억 506만원의 손해를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을 5억원으로 판결한 사례²⁾, 동일 조항(제4조)를 위반한 다른 사건에 있어 1억 5천만원의 손해를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을 3억원으로 판결한 사례³⁾, 기술자료 유용 행위 금지(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사건에 있어 5억원의 손해를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을 10억원으로 판결한 사례⁴⁾에서 알 수 있듯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그 상한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1)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35조 제3항 :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2) 울산지방법원 2020.10.28. 선고 2018가합2645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7.20. 선고 2021가합570137

4) 서울고등법원 2021.12.23. 선고 202나2032402

구분	손해인정액(A)	손해배상액(B)	손해배상 배수 (C=B/A)
사례1	3억 506만원	5억원	1.64배
사례2	1억 5천만원	3억원	2배
사례3	5억원	10억원	2배

□ 경제 및 재산관련 법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안이 법위반행위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⁵⁾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특별히 정하는 행위들의 발생가능성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⁶⁾

□ 한편,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크기를 손해의 5배로 정하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5배 이내’로 상향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유사입법례는 ‘3배 이내’ 또는 ‘5배 이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규율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5) 김차동.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 특징 및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법학논총 40.1 (2023): 83-130.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법위반행위 억제를 위해 당해 법률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09